

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·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0. 27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. 10. 20. 이필레 의원 외 6명
- 나. 회부일자 : 2020. 10. 20.
- 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(2020. 10. 27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레 의원

1) 제안이유

「지역보건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, 과태료 부과·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) 주요 내용

- 가.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 정비
 - 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·징수조례”을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”로 함.
- 나. 「지역보건법」 개정사항 반영 (안 제1조, 안 제3조)

- “제26조제2항” → “제34조제2항”
- “제26조제1항” → “제34조제1항”

다. 과태료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
(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7조 삭제)

라. 과태료 부과기준을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에 맞게 변경 (안 별표)

3. 검토의견(신준호 전문위원)

1) 조례 제정 배경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「지역보건법」의 과태료 규정사항의 인용 조항 변경과 과태료 부과·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제안되었음.

2) 주요 조문 검토

-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 정비
- 안 제1조 목적 및 안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「지역보건법」의 인용조항 변경으로 내용 변경 없이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으로 적시·규정하였고
- 현행 조례 제4조이하의 삭제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 다른법률과의 관계에서 “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”고 규정함에 따라 삭제된 사항임.
- 별표 제3조 관련은 법의 조항 변경에 따라 적시하였고, 기타 별지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등과 관련된 서식을 삭제한 것임.

3) 종합 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요 내용의 변경 없이 법령의 구조적 체계에 맞춘 상위법령의 조항 변경 및 불필요하고 중복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법령의 구조적 정합성을 갖추었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